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9.4.17.(수) 17:00

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이상정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4월 9일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11일

3. 제안 이유

○ 충청북도 및 소속 행정기관,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, 출자·출연 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노동인권 보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·유지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4조)

나.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(안 제5조)

다.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,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와 차별처우 금지 등(안 제6조 ~ 안 제8조)

라. 도지사의 민간부문 장애인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 권고(안 제13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’은 충청북도 및 소속 행정기관,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, 출자·출연 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 제정되는 조례안의 조문 형식과 체계 등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제정은 타당함.